

|             |                                                                                                                                                                                                                                                                                                                                                                                                                                                                                                                                                                                                                                                                                                                                                                                                                                                                                                 |                                                                  |
|-------------|-------------------------------------------------------------------------------------------------------------------------------------------------------------------------------------------------------------------------------------------------------------------------------------------------------------------------------------------------------------------------------------------------------------------------------------------------------------------------------------------------------------------------------------------------------------------------------------------------------------------------------------------------------------------------------------------------------------------------------------------------------------------------------------------------------------------------------------------------------------------------------------------------|------------------------------------------------------------------|
|             | <b>Chap2. 거절이유</b><br><b>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b>                                                                                                                                                                                                                                                                                                                                                                                                                                                                                                                                                                                                                                                                                                                                                                                                                                             | <b>대법원 2026. 6. 25. 선고</b><br><b>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b> |
| <b>제목</b>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                                                                  |
| <b>판시사항</b> |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b>판결이유</b> | <p>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등 참조).</p> <p>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p> |                                                                  |

##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본 판례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동시에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이 함께 문제 되었다.
- 대법원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특히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2) 사안개요

- 원고는 사건 요약상 명칭을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항부터 제11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항부터 제8항**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일부 취소하였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에 해당하는 **제211단계**의 해석
  -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4항부터 제8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부터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 (3) 법리

#### 1) 신규성·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의 확정 기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규성·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확정한다.

---

#### 2) 발명 설명·도면 등에 의한 제한·확장 해석 금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

#### 3) 청구범위 기재사항의 해석 방법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사례형 답안상 핵심 표현은 다음과 같다.
  -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
  -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

#### 4)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방법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 사례형 답안상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 5) 사후적 고찰 금지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진보성 판단에서는 대상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특허법원 / 원심법원 판단

- 원심은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3허10095 판결이다.
- 아래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상 나타난 원심 판단 범위에서 정리한다.

#####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에 해당하는 다음 부분을 해석하였다.
- “상기 제21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1단계”
- 원심은 위 부분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제21단계 이후에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와 동일한 동보메시지를 데이터망으로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2) 진보성에 관한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제4항부터 제8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체적으로 원심은 이 사건 제4항부터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부터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항부터 제8항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일부 취소하였다.

#### (5) 대법원 판단

##### 1) 제1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청구범위 해석

- 대법원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의 확정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에 해당하는 다음 부분을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 “상기 제21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1단계”
- 대법원은 원심이 위 부분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 “제21단계 이후에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와 동일한 동보메시지를 데이터망으로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제2, 3, 4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진보성

-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사후적 고찰 금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하여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제4항부터 제8항 발명에 관하여도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부터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6)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진보성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다.

(7) 한줄 키워드 요약

- 신규성·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확정하되,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진보성 판단에서는 대상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고찰을 해서는 안 된다.